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20
----------	-------

발의연월일 : 2025. 11. 11.

발 의 자 : 윤재옥 · 임종득 · 박충권
이인선 · 최보운 · 김선교
서천호 · 권성동 · 엄태영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출자금 · 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신용협동조합은 2015년 1월 20일 법 개정을 통해 탈퇴 및 제명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조합 채무 부담분인 손실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액은 매년 총회를 거쳐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어야 산정이 가능하여 현실에서는 탈퇴 또는 제명 당시의 회계연도 결산이 확정되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탈퇴 · 제명 조합원에게 출자금이 환급되고 있으며 예탁금 및 적금의 환급은 조합원 탈퇴 · 제명과 별개로 예적금 계약에 따라 지급 · 해지하고 있어 현실과 현행법상 괴리가 발생함.

이에 탈퇴 · 제명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 환급에 관한 사항

을 삭제하고 출자금 환급에 관한 현행 규정을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근거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탈퇴·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출자금 환급 제도와 결산 제도 등 관련 제도가 서로 합치하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중 “출자금 등의”를 “출자금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체 없이 그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금”을 “그 탈퇴 또는 제명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출자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납입한 출자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 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①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하거 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u>지체 없</u> <u>이 그의 출자금·예탁금 및 적</u> <u>금을 환급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 급할 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 원에 대한 <u>출자금의 환급</u>) ① ----- ----- <u>그 탈퇴 또</u> <u>는 제명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u> <u>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u> <u>하는 바에 따라 그의 출자금--</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